

고성군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안

(의안번호 제2049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 및 발의일자 : 2019. 10. 01. 천 재 기 의원 외 3인
나. 회 부 일 자 : 2019. 10. 14.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19. 10. 16. 산업건설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2. 제정이유

- 고성군 4에이치 활성화를 위하여 기초영농 기반조성 및 창업관련 과제 활동 등 후계인력 지원 사업 및 농업 경영능력과 영농기술 향상 교육 등 4에이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범위를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고성군 4에이치육성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나. 지원대상 사업,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, 사업계획서의 제출
(안 제3조 ~ 제5조)
다. 결산보고 등, 보조금 집행에 필요한 사항(안 제6조 ~ 제7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 : 「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」
나. 입법예고 : 고성군의회 공고 제2019-29호
- 입법예고 기간 : 2019. 10. 4. ~ 10. 10.6(일)
- 의견반영 등 조치내용 : 의견없음

5. 본 문 : 붙임과 같음

6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본 조례안은 고성군 4에이치 활성화를 위하여 기초영농 기반조성, 창업관련 과제활동, 후계인력 지원 사업, 농업 경영 능력과 영농기술 향상 교육 등 4에이치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범위와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,
- 검토결과 본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며,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7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8. 토 론 : 없음.

9. 심사결과

- 2019. 10. 16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